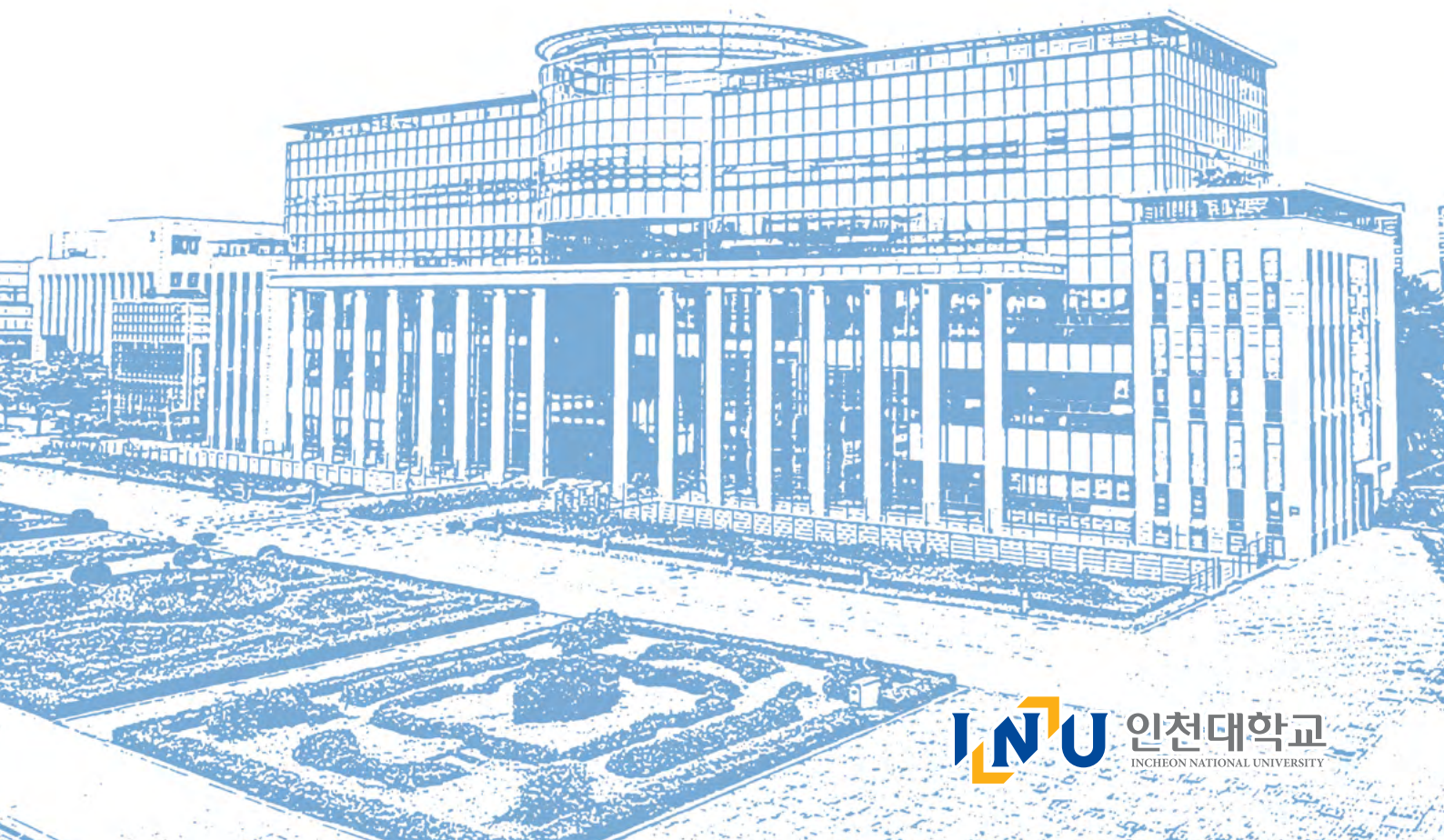




#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2026

국립 인천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계약학과 학부, 대학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계약학과 개요

## ■ 계약학과란?

- 산학협력차원에서 대학과 협약하여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프로그램
-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원격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부)

## ■ 계약학과 설치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 인천대학교 학칙 제5조
-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세부지침



## ■ 계약학과 유형

### •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 입학금 및 등록금은 산업체와 학생이 각 50% 부담

### •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교육 의뢰한 경우
  - ▶ 입학금 및 등록금은 산업체와 학생이 각 50% 부담

## ■ 계약학과 설치 추진 배경

-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맞춤 인재양성
-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 모색과 더불어 산학협력 활성화 촉진

## ■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산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 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자격 및 등록금 납부방법

## ■ 공통 지원자격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소속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학업을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계약학과 등록금의 50% 이상을 소속 산업체 명의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학력 조건 및 재직조건을 충족하는 자

## ■ 신입학과정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본 대학 입학일 기준(2026. 3. 3.)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 학사과정(3학년 편입)

- 4년제 대학에서 2학년(계절학기를 제외한 4학기)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중인 자의 경우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본 대학 입학일 기준(2026. 3. 3.)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 대학원과정

- 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박사과정: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등록금 납부방법



- 가상계좌 고지를 통해 산업체 및 학생 등록금 각각 납부
- 산업체는 매 학기 등록금의 산업체 부담금 납부 사실확인을 위하여 법인 명의 계좌 입금, 이체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체 등록금 납부액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

## ■ 학기별 등록금액(학부)

학과명	등록금(원)
도시건설공학과	3,124,000
테크노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2,986,000

## ■ 학기별 등록금액(대학원 과정)

학과명	입학금(원)	등록금(원)
녹색환경융합학과(석사)	485,000	4,149,000
녹색환경융합학과(박사)	485,000	4,203,000

※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모체학과와 동일하게 책정하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약학과 설치 및 협약체결

- 계약체결 주체 : 인천대학교 총장 - 산업체 대표(서면계약 체결)
- 신규 계약학과 개설 요청 시 대학 내 정규학과에서 운영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계약 추진
-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후 세부 모집현황을 고려하여 계약학과 운영여부 최종 확정
- 계약학과 개설조건
  1. 학사(신입·편입)과정 : 최종합격 대상자 10명 이상인 경우
  2. 대학원 과정 : 최종합격 대상자 5명 이상인 경우

# Q & A

## Q. 재직자 학위과정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재직 중인 산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사업주는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 포함)이며, 산업체가 인천시에 소재하거나 대학과 산업체간 직선거리가 50km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본교 입학일 기준(2026. 3. 3.) 10개월 이상 산업체에 재직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현 산업체 및 타 산업체(4대보험 가입일로 확인)) 마지막으로 산업체에서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상을 졸업 시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 Q. 산업체 대표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A. 산업체 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전문경영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 Q. 수업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이동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학과의 수업방법은?

A. 출석수업은 평일 야간에 진행하며, 설치학과와 협의에 따라 주말 수업도 가능합니다. 전공과목이 온라인으로 개설될 경우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며, 교양과목은 원격수업(이러닝)으로 진행합니다. 졸업학점의 50%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Q. 휴학은 가능한가요?

A. 일반휴학은 계약학과 특성 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휴학 및 질병휴학 등의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Q.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학부 계약학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보훈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 부담금 내에서 지급 됩니다.

## Q. 산업체를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제적처리 됩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 확인)

위 조건으로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 이수한 상태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해야 재학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이후 학적이 유지되는 경우, 등록금은 학생이 전액 부담합니다.

## Q. 졸업 후 학위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A.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으로 수여됩니다.

# 2026학년도 계약학과 모집인원

주관 대학		계약학과명	모집학년	과정	입학정원	수여학위	캠퍼스
학부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무역물류학과	1	신입학	15	물류학사	송도 캠퍼스*
			3	편입학	8	물류학사	
	경영대학	테크노경영학과	3	편입학	20	경영학사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3	편입학	20	공학사	
대학원	녹색환경융합학과	석사과정(신입학)		20	환경융합학 공학석사		
		박사과정(신입학)		5	공학박사		
[정원 외]		합 계			88명		

\* 이동수업 등으로 인하여 수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산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설학과 개설가능

- 전 과정 평일 야간 수업(주말 수업 등은 설치학과와 협의가 필요함)
- 교육장소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 학과개설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학과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학과소개 및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 ■ 녹색환경융합학과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 032-835-8964)

### 학과소개

환경 및 기후 관련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유능하고 전문적인 융복합 환경산업인력 양성과 환경기후관련 산업에 종사 하는 재직자의 향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표교과 및 산업체 맞춤형교과

환경융합특론, 환경관리특론, 환경오염처리특론

## ■ 테크노경영학과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 032-835-8932)

### 학과소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격변이 예상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자산일 것입니다. 테크노경영학과에서는 바로 이러한 창의적 사고와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경영관련 학문을 습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 대표교과 및 산업체 맞춤형교과

기업재무론, 경영조직론, 세무회계, 경영혁신론, 마케팅세미나, 서비스운영관리

## ■ 도시건설공학학과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 032-835-8983)

### 학과소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도시를 계획, 설계, 개발, 재생, 토지이용, 교통, 건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재직자의 향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표교과 및 산업체 맞춤형교과

건설교통공학, 도시재난 및 방재, 건설사업관리학, 도시재생공학, 구조물유지관리 및 계측

## ■ 글로벌무역물류학과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 032-835-8935)

### 학과소개

인천대학교와 지역 물류관련 업체들이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소양을 갖춘 중견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대표교과 및 산업체 맞춤형교과

물류관리론, 무역학개론, 화물운송론, 항만물류실습, 물류컨설팅실무, 국제복합운송론

# 2026학년도 계약학과 신·편입학 전형 주요일정

## ■ 산업체 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26. 1. 2.(목) 12:00(정오)까지 / 각 계약학과 학과 사무실
- 계약학과 사무실 주소: (우) 22012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각 학과사무실)

	과정명	학과 사무실 주소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학부	글로벌무역물류학과	제14호관 208호	(032)835-8935
	테크노경영학과	제14호관 307호	(032)835-8932
	도시건설공학과	제28호관 324호	(032)835-8983
대학원	녹색환경융합학과	제28호관 308호	(032)835-8964
본부	학사과	관련사항 문의	(032)835-9226

- 제출서류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홈페이지 <https://contract.inu.ac.kr/> 서식자료실 참조)

- 가. 사업자 등록증 1부
-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확인 목적 / 지원자 제외한 가입자 음영처리)  
↳ 상시근로자 확인서(별도 서식)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라.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산업체 대표 추천),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마. 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일자 발급)
-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024년도, 2025년도 입사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사. 근로계약서 1부 (본인)
- 아.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서 2부 (대표직인 날인),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 주요 전형일정

구분	일정	안내 및 유의사항
계약서 및 계약관련 서류제출	2026. 1. 2.(금) 12:00까지	- 지원학과 취합 후 학사과 검증
원서접수	2026. 1. 12.(월) 10:00~ 1. 15.(목) 17:00	-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 및 진학어플라이 (학사과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된 산업체 재직자에 한함)
원서관련 서류제출	2026. 1. 12.(월) ~ 1. 19.(월) 17:00	-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미제출 시 사정대상 제외) - 제출방법: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b>2026.1.19.(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b> - 제출처 (우)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1호관 101호) 계약학과 담당자
면접고사 대상자 통보	2026. 1. 23.(금)	-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
면접고사	2026. 1. 31.(토)	- 대면고사 시행(고사장소 추후 공고)
최초 합격자 발표	2026. 2. 6.(금) 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합격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최초 합격자 등록	2026. 2. 10.(화) 10:00~ 2. 19.(목) 16:00	- 등록금은 합격자발표에 따라 합격자가 고지서를 출력하여 산업체에 전달하고 각각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 등록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합격취소

※ 대학원 과정의 전형일정은 별도 확정 후 홈페이지 공지합니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

인천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 \_\_\_\_\_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인천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 (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관)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 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학과명칭</th> <th>학과구분</th> <th>학위과정</th> <th>학위종별</th> <th>모집정원</th> <th>설치 운영 기간</th> <th>교육장소</th> </tr> </thead> <tbody> <tr> <td>○○○학과</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학과명칭	학과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학과	○○	○○	○○	○○	○○○○.○○~○○○○.○○	○○
학과명칭	학과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학과	○○	○○	○○	○○	○○○○.○○~○○○○.○○	○○									
제3조(학생 선발· 입학)	제3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에 허가한다. 단, 대학원 과정은 10개월 이상 재직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인천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필요시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출결사항, 성적 등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8조 (등록금 부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등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 직원이 각각 납부한다.</li> <li>②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 직원의 등록금(입학금 포함)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부담비율 : 50%      2. 학생(근로자) 부담비율 : 50%</li> <li>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li> <li>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li> <li>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 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li> <li>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li> </ol>														
제9조 (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7조의 “등록금 부담” 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가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li> <li>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동· 산업체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li>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li> </ol>														
제10조 (산업체 시설사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li> <li>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li> </ol>														
제11조(대학 시설 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운영 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13조 (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를 학생이 부담한다.</li> <li>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li> <li>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li> </ol>														
제14조(특수조건)	제14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 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학교” : 인 천 대 학 교

“산업체” : 업체명 \_\_\_\_\_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주 소 \_\_\_\_\_

총 장 이 인 재 (직인)

대표자 \_\_\_\_\_ (직인)